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790
----------	-------

발의연월일 : 2023. 12. 7.

발 의 자 : 권은희 · 서병수 · 강민국
이태규 · 金炳旭 · 최연숙
이종배 · 이종성 · 강기윤
양향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아직 공단의 임원 임면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임원) ① (생략)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⑥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생략)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0조에----- ----- -----

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
--	-----------------------------------